

전자거래에서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및 장소의 해석과 적용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Records in Electronic Transactions

강원진(Won-Jin Kang)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국제학부 교수

이창숙(Chang-Sook Lee)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국제학부 강사

목 차

- | | |
|---------------------|--------------------------------------|
| I. 서 론 | V.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및 장소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점 |
| II. 전자기록에 관한 이론적 고찰 | VI. 결 론 |
| III.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 참고문헌 |
| IV. 전자기록 송수신 장소 | Abstract |

Abstract

Determination of th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messages 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operation of many rules of law, particularly the timing of formation of the contract.

In this paper, I reviewe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records in electronic transactions under the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US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ime of dispatch and time of receipt are effective when received. The sender has the burden to prove that the electronic record is sent successfully to the information process system of the recipient.

Therefore, to safety electronic transactions, the sender needs to request a confirm notice for receipt to the recipient when the electronic record is sent like the provisions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By requesting the above, the sender is able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for damage according to the failure of dispatch and receipt of the electronic records.

Key Words : electronic transactions, electronic records, time of dispatch and receipt,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I. 서 론

국제무역거래에서 거래당사자는 계약의 성립 및 이행단계에서 거래의 내용 확인 및 인도의 증거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상대방사자에게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전통적으로 종이문서의 송수신에서는 우편기관이나 특사배달을 주로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송수신의 시기 및 장소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에서는 종이문서에 해당하는 것이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송수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자기록의 송수신은 전송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수신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송수신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며, 또 송수신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모호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약과 승낙, 거절, 취소 등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록의 송수신 시기와 그 장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는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12일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준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MEC)을 채택하였다. 미국통일주법위원회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 NCCUSL)는 MEC를 근거로 하여, 전자서명 및 전자기록에 종이기반거래 수기서명과 같은 동일한 유효성 및 집행성을 부여하고, 전자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틀을 제공¹⁾하기 위하여 1999년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UETA)을 채택하였다. 한국에서도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28일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²⁾ 이러한 전자거래 관련 법제들은 전자기록을 종이기반 기록 및 문서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기록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와 관련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들은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 협약(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CUECIC)에 비하여 송신뿐만 아니라 수신에 대한 책임도 송신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있으며, 송수신 장소인 영업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선행연구³⁾에서 주로 다루어왔던, 전자계약의 성립을 위한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도 불분명하다.

1)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ttp://www.ncsl.org/programs/lis/CIP/ueta.htm>

2) 법률 제8466호, 최종 일부 개정일 2007. 05. 17, 시행일 2007. 11. 18.

3) 손진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현황과 과제” 논문에 대한 정용상의 토론요지, 「비교사법」 제5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12 ; 김철호,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에 따른 법적 제문제”, 「경제학논집」 제8권 제1호, 한국국민경제학회, 1999 ; 송계, “전자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p.235 ; 서백협, “국제거래에서 전자계약 성립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11 ; 박종삼, “전자거래 계약 적용상 몇 가지 논점”, 「국제무역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04.10. ; 김재두,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경영법률」 제15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및 장소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준법과 동법에 근거한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 한국의 전자거래기본법 등을 중심으로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및 장소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는데 한정한다.

또한 연구의 방법은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및 장소를 규정한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 CUECIC, 관련 논문 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II. 전자기록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전자기록의 의미

기록(records)이란 단체나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사무처리 중에 증거 및 정보로서 작성, 수신 그리고 보존된 정보를 말한다.⁴⁾ 즉 유형매체에 기입되거나 또는 전자나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인 것이다.⁵⁾

이러한 기록이 전자적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자기록이다. 전자기록은 [그림 1]과 같이 문서 데이터베이스(문서 프로파일), 내용(문서 자체) 그리고 기록메타 데이터(문맥과 이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ETA에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작성, 생성, 송신,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된 기록을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이라고 한다.⁶⁾ eUCP에서는 이러한 전자기록에는 송신자의 분명한 신원과 전자기록 속에 포함된 자료의 분명한 출처에 대하여 그리고 전자기록이 완성되고 변경되지 않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⁷⁾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이 어떤 활동이나 결정에 대한 증거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자료의 출처 및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기록은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접근 제어로 원거리에서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접근할

4) International Standard ISO 15489-1:2001(E) Article 3.15.

5) Amendments to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2 - Sales, Section 2-103(1)(m), 2002, <http://www.utexas.edu/law/faculty/e-commerce/1st/Statutes/article2정보처리시스템ndments.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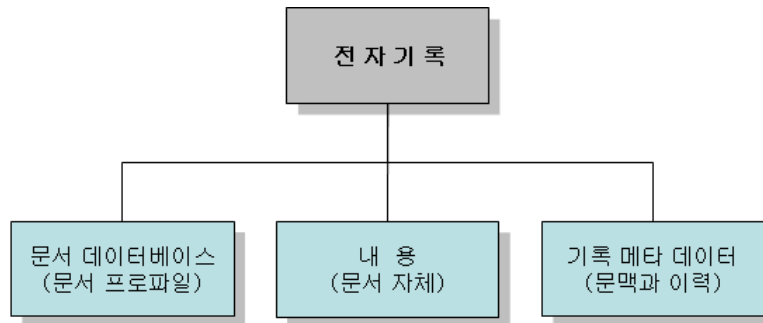
6) UETA, Section 2(7).

7) eUCP Version 1.1, Article e3(b)(i).

8) National Archives, *e-Government Policy For 정보처리시스템work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econd Version, 2001, p.7,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egov_fr정보처리시스템work.pdf

수 있으나, 종이문서보다 훼손되기 쉬우며, 쉽게 다른 내용으로 다시 고쳐 쓸 수 있고, 유실 되거나 또는 기술변화로 인하여 접근이 안 될 수도 있다. 또한 종이기록 관리를 위한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에, 전자기록은 아직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⁹⁾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관련 법제 제정 및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기록은 컴퓨터 등의 장치에 의하여 작성 및 생성되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송수신 또는 저장될 수 있어야 하며, 작성 및 생성 또는 송수신 당시의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필요에 따라 사후적으로 검색 및 처리 될 수 있는 형태로 복구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료 : 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 “전자거래기본법 이해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2005.07, p.15.
http://dism.co.kr/2005/SRP/adobe_edocument/thanks/pdf

[그림 1] 전자기록의 주요 구성요소

2.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

전자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의 발단이자 최종적인 귀결점은 기존의 유형적 형태를 무형적인 디지털로 대체한다고 해서 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자거래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¹⁰⁾ 이에 따라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적 형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전자기록을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그 가치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UNCITRAL은 1985년에 국제무역에서 자동 데이터 처리의 사용에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할 목적으로 컴퓨터 기록의 법적 가치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Legal Value of Computer Records)를 채택하였다.¹¹⁾ 그 후 1996년에 MEC을 제정하여 정보는 데이터 메시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

9) *Ibid.*

10)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12, pp.99-100.

11)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electronic_commerce/1985Recommendation.html

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구속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¹²⁾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UETA에서도 기록은 전자적 형식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 또는 구속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¹³⁾ 법률이 서면으로 존재하는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전자기록은 그 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¹⁴⁾고 규정하고 있다.¹⁵⁾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¹⁶⁾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전자서명에 관한 표준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 UMES), 미국의 세계 및 국내 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E-Sign Act), 그리고 CUECIC 등도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을 현행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은 이러한 관련 법제들에 의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거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부분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Ⅲ.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1. 유효한 송신

전자기록의 송신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보스(Amelia H. Boss)¹⁷⁾ 교수는 첫째, 송신자가 컴퓨터에 있는 ‘전송(send)’ 버튼을 눌렀을 때, 둘째, 송신자의 서버로 이동(travel)할 때, 셋째, 송신자의 서버를 떠나 인터넷을 통해 이동하기 시작할 때, 넷째, 수신자의 서버에 도달할 때, 다섯째, 부전하여(tagged) 수신자의 우편함에 두었을 때 등 다양할 수 있다고 한다.¹⁸⁾

12) MEC, Article 5.

13) UETA, Section 7(a).

14) UETA, Section 7(c).

15) 본 법의 제정 이후 40개 이상의 주에서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Roberto Rosas, “Comparative Study of the Formation of Electronic Contracts in 정보처리시스템적 Law with References to International Law”,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Law Review*, Vol.13 No.1, 2007, p.6.

16) 한국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17) Charles Klein Professor of Law,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Philadelphia Pa; Chair,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Business Law. Professor Boss served as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dvisor to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Drafting Committee, as well as serving as part of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to the UNCITRAL during the negotiations on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melia H. Boss,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a Global Environment”, *Idaho Law Review*, Vol.37 No.275, 2001, p.1.

18) *Ibid*, p.18.

이에 따라 MEC에서는 송신자의 지배를 벗어나 어떠한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 데이터 메시지의 송신이 이루어진 것이다¹⁹⁾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송 버튼을 누르면 송신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송신한 데이터 메시지가 송신자의 통제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UETA에서는 수신자가 전자기록이나 송신된 형태의 정보를 수신할 목적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적절히 보내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절히 인도되고(directed), 이러한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신자가 전자기록을 검색할 수 있거나 이러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식으로 있을 때 그리고 송신자나 송신자를 대신하여 전자기록을 보낸 자의 통제 밖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들어가거나 또는 수신자가 지정하거나 사용하는 수신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때 송신이 이루어진 것이다²¹⁾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MEC의 결함²²⁾을 보완하고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4가지 방식을 추가하여 송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전자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본다.²³⁾

따라서 전자기록의 송신은 수신자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들어가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어야 유효하다. 즉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송신시기의 해석과 적용

거래당사자 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문서는 일반적으로 수신자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송신자의 문서 내용을 수신자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종이거래에서는 청약 및 승낙과 관련하여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각각 다르게 보고 있다.

먼저 청약과 관련하여 영미법은 대체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엔나협약(CISG)과 한국 민법에서도 도달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승낙과 관련하여서는 주요 법제별로 격지자간이나 또는 대화자간이나에 따라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원칙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²⁵⁾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격지자간의 주요 통신수단인 우편이나 특사배달(couriers)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발신주의(mailbox rule)²⁶⁾가 유용하였다.²⁷⁾ 예를 들어,

19) MEC, 1996, Article 15(1).

20) Amelia H. Boss, *op. cit.*, p.18.

21) UETA Article 15.

22) MEC는 메시지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부분적으로 동일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있는 경우를 다루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 Amelia H. Boss, *op. cit.*, p.18.

23) 한국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24)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5, p.15 참고.

25)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보면 영미법은 물론 대륙법 계통에서도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으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新堀 聰, 「貿易取引入門」 日本經濟新聞社, 1992, 34面.

26) 발신주의 원칙의 근거가 된 판례는 *Adams v. Lindsell* 사건이다. 이 원칙의 의미는 승낙의 서한이 투함된 때 승낙이

Farmer's Produce Co. v. McAlester Storage & Commission Co. 사건²⁸⁾에서 청약자가 전보(telegraph)로 청약하고, 피청약자는 2월 2일에 승낙을 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청약자는 전신(wire)으로 청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계약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2월 2일 우편에 의해 이루어진 승낙이 계약을 성립시켰다고 판결했다.²⁹⁾ 즉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 발신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전자거래에서는 종이기반거래에 근거하여 전자거래를 격지자간으로 볼 경우와 대화자간으로 볼 경우에 따라 승낙에 따른 계약의 성립시기가 달라진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신주의로 보는 입장³⁰⁾과 도달주의로 보는 입장³¹⁾으로 나뉘어졌다.

물론 전자거래에서 전자기록 송신은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격지자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송신과 수신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24시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수신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전자기록의 송신은 청약이나 승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기록이라 하더라도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들어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³²⁾

이루어진 것이며 청약자가 실제로 서신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우광명, “전자계약 성립시기 결정을 위한 메일박스규칙 적용의 타당성”,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03, p.5.

27) 한응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비교사법」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12, p.22

28) 48 Okla. 488, 150 P. 483, 1915.

29) 그 외 *Stephen M. Weld & Co. v. Victory Mfg. Co.* 사건(205 F. 770 D.C.N.C., 1913), *W. G. Ward Lumber Co. v. American Lumber & Mfg. Co.* 사건(247 Pa. 267, 93 A. 470, 1915), *Morrison v. Tholke* 사건(155 So. 2d 889, Fla. App., 1963), *Panhandle Rehabilitation Center, Inc. v. Larson* 사건(205 Neb. 605, 288 N.W. 2d 743, 1980) 등에서도 인정되었다.

30) E-mail은 우편승낙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Paul Fasciano, “Internet Electronic Mail: A Last Bastion for the Mailbox Rule”, *Hofstra Law Review*, Vol.25 No.971, 1997, p.13 ;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 UCITA)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계약에서는 발신주의가 유지되어야 한다. Valerie Watnick, “The Electronic Formation of Contracts and the Common Law Mailbox Rule”, *Baylor Law Review*, Vol.56 No.175, 2004, p.11 ; 전자계약 성립시기의 결정을 위한 메일박스규칙 적용의 타당성은 아직까지 그 관례가 존재하지 않아 그 경향을 확신할 수 없지만 관련 법규를 통한 분석의 결과 메일박스규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광명, 전제논문, p.22 ; UCITA는 컴퓨터 정보 계약에만 관계되기 때문에, 발신주의 원칙이 미국 전자계약에 여전히 적절하다. Sylvia M. Kierkegaard, “E-Contract Formation: U.S. and EU Perspective”, *Shidler Journal of Law, Commerce & Technology*, 2007, p.8

31)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전자문서가 초단시간내에 도달한다는 점과 도달하지 않은 사실이 승낙자에 의하여 쉽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하여는 도달주의를 취하는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손진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현황과 과제” 논문에 대한 정용상의 토론요지, 「비교사법」 제5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12, p.191 ; 전자화된 의사표시의 전송속도가 빨라 발신과 도달이 사실상 동시적이고, 향후 실시간 데이터전송시스템이 보편화 될 것이 명백하며, 또한 불도달 사실은 상대방이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전자화된 의사표시는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송계의, 전제논문, p.235 ; 전자계약의 성립시기는 발신시점과 도달시점간에 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화자간의 거래로 간주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국제협약에서 도달주의가 일반추세이고, 승낙의 의사가 발신된 후 네트워크의 장애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전자계약의 성립에 따른 의무발생시점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더욱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서백현, 전제논문, p.215 ; 전자문서의 전송속도가 사실상 동시적이며 향후 실시간(real time) 문서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임을 고려하면 도달주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박종삼, 전제논문, p.5.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청약과 승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서 실시간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지면,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논의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대화자간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도달주의에 따라 성립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김철호, 전제논문, p.325, 김재두, 전제논문, p.45.

32) 이 스위트 사용자 안내서(SWIFT User handbook)에도 의도된 수령인에게 아직 도달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하여 발행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스위트는 세계은행간 금융데이터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SWIFT)로 국제간의 대금결제 등에 관한 데이터통신의 연결망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 벨기에법(Belgium Law)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은행간에 통신의 효율성 제고와

본 연구에서는 전자거래를 격지자간 거래 또는 대화자간 거래로 구분하기 이전에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의 송수신 시기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해 볼 때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 표시를 담고 있는 전자기록이나 그렇지 않은 전자기록이나 송신은 수신자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들어가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어야 유효 하다는 것이다. 즉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구분하지 않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기록의 송신으로 해석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기록 송신 시기는 계약의 성립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중요하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시점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승낙의 정확한 시기나 승낙의 확인은 필적할 만한 승낙(competing acceptances)이 있을 경우에 더욱 중요할 것이다.³³⁾

물론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은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 UCITA)에서 전자적 승낙은 수신되었을 때 유효하다³⁴⁾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비아(Sylvia)³⁵⁾는 UCITA에 적용되는 계약에만 도달주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적용한다면 전자거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혼란만 초래시킬 뿐이다.

3. 유효한 수신

전자기록의 수신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보스 교수는 첫째, 메시지가 수신되었다는 것을 수신자가 알았을 때, 둘째, 수신자가 메시지에 접근했을 때, 셋째, 수신자가 메시지를 열었을 때, 넷째, 수신자가 메시지를 읽었을 때 등으로 수신 또한 다양할 수 있다고 한다.³⁶⁾ 전자기록 수신시기는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수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 e-mail을 통하여 송신할 때에는 수신자가 전자우편함 등에 접속하여 메일 수신을 명령하여 자신의 컴퓨터 등으로 전송될 때 수신되었다고 할 것이다.³⁷⁾

MEC에서는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 수신된

종래의 우편, 전신, 텔렉스보다 편리하고 신뢰성이 높고 통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이용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0, pp.205-206, p.216.

33) Sylvia M. Kierkegaard, *op. cit.*, p.7.

34) UCITA, 1999, Section 203(4).

35) Sylvia Mercado Kierkegaard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authorities in computer law. Her articles are widely published in top law and IT journals and books. Her work is frequently cited in court judgments, and research papers and she has published books and over 2000 articles in journals, 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Sylvia M. Kierkegaard, *op. cit.*, p.10.

36) Amelia H. Boss, *op. cit.*, p.18.

37)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현실과미래, 2000, p.112.

것으로 간주되며,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수신자의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송신된 경우에는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에 의하여 검색된 때가 수신시기이다.³⁸⁾ 이와 달리 수신자가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³⁹⁾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의 의미는 데이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수신자가 알 필요가 없으며,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를 실제로 읽거나 접속(access)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⁴⁰⁾

UETA에서는 수신자가 송신된 형태의 전자기록이나 정보를 수신할 목적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기록이 들어간 후 이러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수신자가 이를 검색할 수 있을 때 또는 이러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capable)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수신으로 간주되며,⁴¹⁾ 이러한 수신은 자연인(individual)이 전자기록의 수신을 알지 못하더라도 수신으로 인정된다.⁴²⁾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된 것이며,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 수신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⁴³⁾를 수신으로 간주한다. 동법에서는 MEC와 마찬가지로 수신확인 규정⁴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송신자는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보낼 수 있으며 수신확인 통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송신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신 시 발생한 오류로 인한 송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600의 추록(Supplement to UCP 6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eUCP)에서도 유효한 수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자기록이 정보시스템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식으로 적절히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⁴⁵⁾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기록의 수신은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들어가거나 그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어야 된다.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은 송신과 달리 수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송신자가 지정된 시스템으로 전자기록을 송신한 경우에는 송신과 동시에 수

38) MEC, Article 15(a).

39) MEC, Article 15(b).

40) Amelia H. Boss, *op. cit.*, p.19.

41) UETA, Section 15(b).

42) UETA, Section 15(e).

43) 한국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44) ①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②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한국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45) eUCP Version 1.1, Article e3(b), (v).

신이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송신과 동시에 수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는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히 송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신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만이 유효한 수신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4. 수신시기의 해석과 적용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르면, 수신자가 전자기록을 수신하기 위해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수신은 전자기록이 이러한 시스템에 입력된 때 이루어진다. 이처럼 수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수신을 정하는 것은 수신자가 수신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서버나 또는 기타 서버에 그냥 남겨둘 수 있는 잠재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다.⁴⁶⁾ 또한 수신자가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검색한 때, 또는 검색할 수 있어야 유효한 송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기록이 적절히 보내지지 않거나 또는 송신자가 검색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보냈을 경우, 전자기록이 송신되었다는 송신자의 주장에 대해 수신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⁴⁷⁾

MEC에서는 지정된 정보시스템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있는 경우 송신자가 이러한 정보시스템으로 송신한 경우 송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신시기가 된다. 그러나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자의 그 외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송신한 경우 수신시기는 수신인이 이를 검색했을 때이다. 이에 반해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처리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송신으로 되며 송신과 동시에 수신시기가 된다.

이에 반해 UETA에서는 수신자가 전자기록을 검색할 수 있거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이는 수신자가 전자기록을 이해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면 또는 전자기록이 암호화되어 있거나 달리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면 수신자는 유효한 수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⁴⁸⁾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⁴⁹⁾하고 있기 때문에 송신자에게 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UETA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상의 발신주의 원칙(mailbox rule)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자연인이 전자기록의 수신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수신 되었을 때 전자기록은 유효하다.⁵⁰⁾ 수신은 송신자의 통제를 벗어나 전자기록이 적절히 보내지거나 또는 수신자의 통제하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자기록은 의도된 수신자(intended recipient)가 수신을 위해 지정한 주소에 보내지거나 또는 실제로

46) UETA, Article 15, Comment 3, p.47.

47) Amelia H. Boss, *op. cit.*, p.19.

48) Anjanette H. Raymond, "Electronic Commerce and The New UNCITRAL Draft Convention", *Practicing the Law of the World from New York*, Vol.19 No.66, 2006, p.5.

49) Henry D. Gabriel, "The Fear of The Unknown: The Need to Provide Special Procedural Protections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Loyola Law Review*, Vol.50 No.307, 2004, p.5.

50) UETA, Section 15(e).

수신자가 이러한 형식의 전자기록을 받으려고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보내져야만 한다.⁵¹⁾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MEC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신시기와 달리 수신시기만을 정보처리시스템의 유무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송신자에게 송신보다 수신책임을 더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신은 수신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 수신인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어야 수신으로 보기 때문에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수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송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⁵²⁾

따라서, 도달주의가 송수신 과정에서 송신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는 하지만, 수신자의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송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거래의 송수신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기록이더라도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일부 송신요건과 수신요건이 동일하여, 즉 송신과 동시에 수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신주의나 도달주의나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전자기록이 도달했을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전자기록 송수신 장소

1. 송수신 장소의 의미

전자기록 송수신 장소는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의미한다. 즉, 명시적으로 전자기록에 규정되거나 또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기록은 송신자의 영업소에서 송신되고, 수신자의 영업소에서 수신된 것으로 간주된다.⁵³⁾ 그러나 작성자와 수신자가 수개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영업소는 기초가 되는 거래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이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된 영업소가 유효한 영업소가 될 것이다. 만약 당사자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주지를 참조한다.⁵⁴⁾ 이는 UETA와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위치를 알지 못한 채 전자기록을 송수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자거래의 송수신 장소를 영업소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업소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를 참조하는 것이다.

51) Jane K. Winn and Benjamin Wright, *Law of Electronic Commerce*, Fourth Edition, Aspen Law & Business, 2004, p.5.05[e].

52) 최경진, 전제서 p.112 참조.

53) MEC, Article 15(4).

54) MEC, Article 15(4)(a), (b).

2. 영업소의 해석과 적용

전자거래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영업소를 어디로 간주할 것인가가 결정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영업소를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단지 영업소가 복수인 경우 또는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신자의 영업소에 근거하는 것이지, 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위치에 근거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처리시스템의 위치보다 당사자가 어디에 있는가에 그 근거를 둔 것이다.⁵⁵⁾ 이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이 당사자간의 거래와 전적으로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전자거래의 이용자는 통신이 이루어지는 정보시스템의 위치를 모르고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통신한다. 게다가 두 당사자 중 한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통신시스템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⁶⁾

이에 반해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 협약(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CUECIC)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당사자의 영업소는 그 당사자가 제시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그 장소에 영업소가 없음을 다른 당사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⁵⁷⁾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자가 제시하는 영업지를 영업소로 추정하는 것은 반증될 수 있으므로 전자거래에서 법률적 불안정성을 가속시킬 수 있다.⁵⁸⁾ 하지만 영업소에 대해 부정확한 제시나 국제적인 사기에 의한 제시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예를 들어, 제시한 위치에 영업소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당사자가 경제적 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비일시적인 업장이 존재하는 곳이 영업소가 될 것이다.⁶⁰⁾ 따라서 거래당사자는 자신의 영업지에 관하여 정확하고, 정직하게 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 당사자가 사용한 정보시스템의 장비 및 기술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나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접속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위치는 영업소가 되지 아니한다.⁶¹⁾ 게다가 한 당사자가 특정 국가와 관계된 도메인명이나 전자 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소가 그 나라에 위치해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²⁾ 이는 영업소라는 개념을 전적으로 해석론에 맡김에 따라 발생하는 불명확성을 명문으로 해결

55) Henry D. Gabriel, *op. cit.*, p.5.

56) UETA, Article 15 Comment 4, p.48.

57) CUECIC, Article 6.1.

58) 오원석, “국제전자계약준비초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4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2, p.11.

59) 오세창, “전자계약 예비협약초안에 대한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대안”, 「국제상학」 제18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06, p.40.

60) 오병철, 전제논문, p.107.

61) CUECIC, Article 6.4.

62) CUECIC, Article 6.5.

하고자 한 것이다.⁶³⁾

한국 대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 결정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등록·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의 이전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분쟁의 내용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⁶⁴⁾

따라서 전자기록의 송수신은 송수신자가 실제 어디에서 소재하든지 간에 송수신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소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협약의 규정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송수신 장소의 기준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V.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및 장소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점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및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법 규범(rules of law)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⁶⁵⁾이다. 이에 따라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기록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및 장소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송수신의 책임을 모두 송신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송신된 경우에는 송신 시기가 곧 수신 시기가 된다. 그러나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수신자의 다른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에는 수신자의 검색 및 출력이 이루어져야 수신으로 간주된다. 특히 UETA에서는 송수신의 시기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들어간 후 검색될 수 있거나 이러한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처리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있어야 송수신으로 인정하고 있어, MEC와 한국 전자거래기본법 보다 더 송수신 책임을 송신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수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종이기반거래에서는 서한이 적절히 우송되었다는 것이 증명 되면, 반대되는 증거가 없을 때에는 공식우편제도(public mails)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신되었다는 것이 추정되어 원만히 해결된다.⁶⁶⁾ 전자기록 송수신 과정은 다단계성과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그 도달 여부가 종이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그 전자기록의 실체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 기술발달의 정도로서도 통신망을 통한 때 그 유실의 위험성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불식

63) 오병철, 전계논문, p.98.

64) 대법원 2005. 0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65) Christopher T. Poggi, "Electronic Commerce Legislation - An Analysis of European and American Approaches to Contract Formatio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Vol.41, No.224, 2000, pp.15-16.

66) American Jurisprudence, § 265. Presumption of receipt of letter from proof of mailing—Time of receipt, Second Edition, 2007.05.

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자기록의 송수신은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 되는 것이다.⁶⁷⁾ 따라서 전자거래에서는 송수신 책임을 모두 송신자에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송신자는 수신확인을 통해 송수신 실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신확인 유무에 따라 계약의 성립장소가 달라진다. 거래를 할 때에는 교환약정이나 거래당사자 약정에서 계약의 준거법 및 재판관할에 관하여 정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내용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준거법 등을 정함에 있어 계약성립 장소가 문제시 된다. 학설은 승낙의 효력발생지를 계약성립 장소로 보는데, 이는 그 장소에서의 승낙행위가 단순한 거래교섭을 구속력 있는 법적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⁶⁸⁾

예를 들어 전자거래에서 청약에 대해 승낙자가 승낙할 경우 승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기록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이때의 계약성립 장소는 청약자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승낙자가 수신확인을 요청한 경우 청약자가 승낙의 전자기록을 수신한 후 수신확인을 승낙자에게 보내야 만이 승낙의 효력이 발생⁶⁹⁾하기 때문에 이때의 계약성립 장소는 승낙자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신확인 여부에 따라 계약의 성립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는 준거법이나 재판관할에 대해 미리 약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법제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영업소를 둔 甲이 한국에 영업소를 둔 乙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자적 통지를 하는 경우에 甲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메일계정이 있는 ‘미국 야후’의 메일서버 → 미국 IX(internet exchange) → 한국 IX(internet exchange) → 乙의 메일계정이 있는 ‘다음’의 메일서버를 통해 乙의 컴퓨터의 경로로 전송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야후’의 메일서버를 벗어나 미국 IX에서 한국 IX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태평양상의 네트워크에 이상이 생겨 데이터가 소실된 경우를 가정해 볼 때, CUECIC에 따르면 이미 甲의 지배범위인 야후의 메일서버를 벗어나는 순간에 송신이 이루어졌다⁷⁰⁾고 할 것이지만,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면 乙의 지배하에 있는 컴퓨터, 즉 ‘다음’의 메일서버의 乙계정에 입력되지 않았으므로 송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⁷¹⁾

넷째, 기술중립성으로 인하여 전자기록의 보관 및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 즉 전자기록의 송수신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⁷²⁾ 전자기록의 송수신은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67) 사법연수원, 「전자거래법」 성문인쇄사, 2007, p.63.

68) 한웅길, 전계논문, p.25.

69) MEC, Article 14 ; 한국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70) CUECIC, Article 10(1).

71) 오병철, 전계논문, p.122.

72) 정보화의 추진에 따라 과거 종이문서에 의존하던 일들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되면서, 종이문서의 작성, 보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른바 무서류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업무효율화는 국가 경제를 보다 고효율, 저비용의 구조로 가져가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 될 것이다. 이는 오늘날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김선광,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내용”,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04, p.192.

들어가거나 또는 수신자가 이러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검색할 때 유효한 송수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기록을 저장 및 검색하기 위해서는 송신되어온 전자기록 내용이 변경 없이 보관 및 관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전자기록을 보관할 설비를 갖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거래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⁷³⁾

또한 E-Sign Act에서도 전자기록에 대한 서명의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책임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지침도 제공하지 않은 채 기술중립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⁷⁴⁾ 따라서 기술중립성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기술 및 환경하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전자거래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최근 전자기록의 송수신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기록은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위한 도구로서 컴퓨터를 통하여 작성하는 경우와 컴퓨터가 의사결정 영역에 개입하여 자동화된 거래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전자기록의 송수신은 거래당사자간의 의사전달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전자거래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기록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법제들을 연구한 결과, 전자기록 송신 시기는 수신자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거나 검색할 수 있을 때이다. 즉 송신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수신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신 또한 수신자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거나 검색할 수 있을 때로 간주된다. 만약 송신이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내졌다면 송신과 동시에 수신이 이루어지며, 이는 수신자가 수신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수신자의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신이 그 외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내졌다면 수신자가 이를 검색할 수 있거나 검색된 때가 유효한 수신이 된다. 따라서 송신과 동시에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송신자가 적절하게 송신하지 않거나 검색 및 사용할 수 없는 형식으로 송신한 것에 대해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MEC, UETA 그리고 한국 전자거래기본법의 송수신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경우에도 종이기반 거래와 같이 격지자간이나 대화자간이나를 구분하기 이전에 전자기록의 송수신은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송수신의 효력이 수신자에게 도달해

73) 나승성, 「New 전자상거래법」 청담출판, 2002, p.521.

74) 프로그래밍의조정위원회, “WTO 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대응방안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01, p.192.

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적절한 송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 및 책임이 모두 송신자에게 있다.

따라서 송신자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신 시 수신확인 통지를 요구하여 적절한 송신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5.
- _____,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0.
- 김선광,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내용”,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04.
- 김재두,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경영법률」 제15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 김철호,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에 따른 법적 제문제”, 「경제학논집」 제8권 제1호, 한국국민경제학회, 1999.
- 나승성, 「New 전자상거래법」 청림출판, 2002.
- 박종삼, “전자거래 계약 적용상 몇 가지 논점”, 「국제무역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04.10.
- 사법연수원, 「전자거래법」 성문인쇄사, 2007.
- 서백현, “국제거래에서 전자계약 성립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11.
- 손진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현황과 과제”, 「비교사법」 제5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12.
- 송계의, “전자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 新堀 聰, 「貿易取3引|4入門」 日本經濟新聞社, 1992.
-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12.
- 오세창, “전자계약 예비협약초안에 대한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대안”, 「국제상학」 제18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06.
- 오원석, “국제전자계약준비초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4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2.
- 우광명, “전자계약 성립시기 결정을 위한 메일박스규칙 적용의 타당성”,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03.
-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현실과미래, 2000.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WTO 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대응방안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01.
- 한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 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 “전자거래기본법 이해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2005.07, p.15. http://dism.co.kr/2005/SRP/adobe_edocument/thanks/pdf
- 한용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비교사법」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12.
- Amendments to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2 - Sales, Section 2-103(1)(m), 2002, <http://www.utexas.edu/law/faculty/e-commerce/1st/Statutes/article2amendments.pdf>
- Boss A. H.,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a Global Environment”, *Idaho Law Review*, Vol.37 No.275, 2001.
- Fasciano P., “Internet Electronic Mail: A Last Bastion for the Mailbox Rule”, *Hofstra Law Review*, Vol.25 No.971, 1997.
- Gabriel H. D., “The Fear of The Unknown: The Need to Provide Special Procedural Protections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Loyola Law Review*, Vol.50 No.307, 2004.
- International Standard ISO 15489-1 : 2001(E)
- Kierkegaard S. M., “E-Contract Formation: U.S. and EU Perspective”, *Shidler Journal of Law, Commerce & Technology*, 2007.
- Martin C. H., “The UNCITRAL Electronic Contracts Convention : Will it be Used or Avoided?”,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2005.
- National Archives, *e-Government Policy Framework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econd Version, 2001,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egov_framework.pdf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ttp://www.ncsl.org/programs/lis/CIP/ueta.htm>
- Poggi C. T., “Electronic Commerce Legislation - An Analysis of European and American Approaches to Contract Formatio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Vol.41, No.224, 2000.
- Raymond A. H., “Electronic Commerce and The New UNCITRAL Draft Convention”, *Practicing the Law of the World from New York*, Vol.19 No.66, 2006.
- Rosas R., “Comparative Study of the Formation of Electronic Contracts in American Law with References to International Law”,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Law Review*, Vol.13 No.1, 2007.
- Schmitthoff, C. M., *Export Trade*, Stevens & Sons, 1990.
- Supplement to UCP 6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 Version 1.1.
- UNCITRAL Recommendation on the Legal Value of Computer Records, 1985.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 UNCITRAL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2005.
- USA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1999.

US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Watnick V., "The Electronic Formation of Contracts and the Common Law Mailbox Rule", *Baylor Law Review*,
Vol.56 No.175, 2004.

Winn J. K. and Wright B., *Law of Electronic Commerce*, Fourth Edition, Aspen Law & Business, 2004.